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19 발의연월일: 2022. 6. 16.

발 의 자 : 임병헌 · 강기윤 · 강대식

김상훈 • 김석기 • 김영식

김예지 • 김용판 • 김형동

박형수 · 양정숙 · 최연숙

하영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관광종사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여행·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관광종 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 용이 중요한 상황임.

이에 시 · 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 등) 시·도지사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9조의2(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의 양성 및 활용 등) 시·도지
	사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 전
	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
	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u>할 수 있다.</u>